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인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 528 2015년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15. 6. 10.

2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3. 회부일자 : 2015. 6. 17.

4. 상 정: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

1)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15.7.2.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

Ⅱ. 제안설명 요지(기획조정실장 류혜숙)

- **주요 결산 내용**을 말씀드리면
 - 수입은 총 179억 9천 3백만원으로 공제료수입 47억 4천 4백만원, 이자수입 6억 2천 6백만원, 소방수익(수익사업 전입금) 1억 2천만원,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5천 3백만원, 전년도 이월금 124억 5천만원이고,
 - 지출은 총 79억6천3백만원으로 사업비 68억원, 학교폭력피해지원비 9천 2백만원, 일반운영비 10억 7천 1백만원이며,
 - 다음연도 이월금은 100억 3천만원임

Ⅲ.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엄지운)

(1) 제안경위

○ 「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승인안」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5년 6월 10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

(2) 기금 결산 개요

O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명세서는 아래와 같음

〈표 7-1〉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명세서

(단위 : 백만원)

	÷	수 입				지	출		다음연도
계	전년도 이월액	공제료 수 입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	고 유 목 적 사업비	인 력 운영비 (인건비)	기 본 경 비 (운영비)	이월액
17,993	12,450	4,744	626	172	7,963	6,891	740	330	10,030

※ 기타수입 : 수익사업(학교소방시설관리사업) 운영수익금+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구상금

※ 고유목적사업비 : 공제급여지급, 예방홍보사업, 학교폭력피해지원

- 수입결산은 17,993백만원으로
 - 공제료수입 4.744백만원과
 - 이자수입 626백만원, 수익사업 전입금 120백만원
 -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53백만원
 - 전년도 공제사업(학교폭력피해지원 이월금 포함) 12.450백만원임
- O 지출결산은 7,963백만원으로
 - 공제급여지급 6.624백만원과
 - 예방홍보사업 99백만원
 - 학교폭력피해지원 92백만원
 - 인건비 741백만원
 - 업무추진비 33백만원
 - 일반운영비 374백만원
- O 다음연도 이월액은
 -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(이월금) 10.030백만원

(3) 검토 내용

- 동 기금 결산승인안은 2015년도부터 예산심사 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우리 시의회가 처음으로 심사·의결한 바,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승인받고자 개별안건으로 제출된 것임
- O 서울시교육청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 52조1)에 따라 2007년부터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운용하고 있음
-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2014회계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100억 3,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(124억 5,000만원)보다 △ 24억 2.000만원(△19.4%)이 감소한 것임

〈표 7-2〉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현황

(단위: 백만원, 개)

	전년도말 현 재 액 (A)	당해연도	중감액	당해연도말 현 재 액	중 감(A-B)		
		수 입	지 출	(B)	금액	비율	
	12,450	5,543	7,963	10,030	△2,420	△19.4	

^{1) 「}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

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은 공제료 수입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기금의 운용수익, 적립금, 결산상 잉여금, 차입금, 기부 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.

- 수입액은 총 55억 4,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(48억 5,800만원) 보다 14.1%, 6억 8,500만원이 증가한 것임
 - 공제료 수입은 전체 수입(55억 4,300만원)의 85.5%인, 47억 4,400만원으로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내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, 공제급여의 지급실적,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결정하며, 2014회계연도의 경우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²⁾한 금액대로 공제료를 결정하여 수납한 것으로 전년대비 8억 4,900만원 (21.8%) 증가한 것임
 - · 다만, 유치원 및 초·중등학교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3)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그동안 공제료 미납에 대한 제재 근 거법령이 없어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나, 2015년 1월 20일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개정4)됨에 따라 2015년 7월 21일부터는 공제료 납부명령 등 공제료 미납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 - 이자수입은 6억 2,600만원으로 이월금 감소 및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하여 직전회계연도(7억 3,100만원)보다 14.4% 감소한 것으로

2) 2014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(학생1인당 기준 공제료) (단위:원)

구 분	유	초	중	고
2014	1,770	2,420	4,980	5,970
2013	1,500	2,120	4,440	5,470

- 3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)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. 다만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
- 4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공제료)
 -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 납부명령 등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.20.>

- ·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경우 정기예금(일부 저축보험 포함), 보통예금, 임대보증금으로만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, 이자수입은 정기예금(92억원)과 보통예금에서 발생한 것임
- 소방수익은 1억 2,000만원으로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5)에 따라 공제회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소방안전점검사업에서 발생한 것임

〈표 7-3〉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주요항목	2014	2013	증	감
ी च	T # 8 =	2014	2013	금액	비율
전	<u>년</u> 년도 이월금	12,450	15,104	$\triangle 2,654$	△17.6
	소 계	5,543	4,858	685	14.1
	공제료수입	4,744	3,895	849	21.8
 수입	이자수입	626	731	△105	$\triangle 14.4$
T H	소방수익	120	120	0	0.0
	지 원 금	0	60	△60	순감
	학교폭력구상금회수	53	52	1	1.9
	소 계	7,963	7,512	451	6.0
 지출	사업비(공제급여 등)	6,800	6,487	313	4.8
기호	사업비(학교폭력피해지원)	92	70	22	31.4
	기관운영비	1,071	955	116	12.1
당히	l연도말 현재액	10,030	12,450	△2,420	△19.4

○ 지출액은 총 79억 6,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(75억 1,200만원)보다 6.0%, 4억 5,100만원이 증가한 것임

^{5) 「}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공제회의 사업)

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^{- 「}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0조의3(공제회의 수익사업 등)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(이하 "공제회"라 한다)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^{1.}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·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

^{2.} 소독·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

^{3.}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

- 공제급여는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(68억원 9,200만원)의 96.1%인, 66억 2,400만원이 지급된 바,
- · 지급현황을 검토하면, 직전회계연도보다 지급 건수가 2,074건 증가하고 지급액도 5억 2,000만원 증가한 바, 학교폭력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체육활동 확대되고 직업체험,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이증가됨에 따라 보상건수 등이 연동되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됨
- · 또한, 1건당 요양급여 지급금액은 35만 4,000원으로 직전회계연도 (34만 2,000원)보다 의료 수가 및 물가상승에 따라 12,000원 증가 된 것임

〈표 7-4〉공제급여 지급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	14	20	13	증감		
ा च	건수	건수 금액		금액	건수	금액	
계	13,501	6,624	11,427	6,104	2,074	520	
요양급여6)	13,473	4,781	11,410	3,905	2,063	876	
장해급여7)	23	1,555	12	1,508	11	47	
유족급여8)	2	248	3	649	△1	△401	
위로금9)등	3	40	2	42	1	$\triangle 2$	

^{6) 「}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
제36조(요양급여) ①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.

⁷⁾ 제37조(장해급여) ①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「국가배상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 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.

⁸⁾ 제39조(유족급여) ① 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「국가배상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되,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.

⁹⁾ 제40조의2(위로금)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Ⅳ. 심사결과

- 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2. 토론요지 : 없음
- 3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4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5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

의안 번호 **528**

제출년월일 : 2015년 6월 10일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사업개요

가. 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18조, 제24조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, 제53조
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

나. 목적

-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공제급여의 충당
- 학생,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, 적정하게 보상
- 교직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보전
-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과 가해자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과려되 업무 수행

2. 2014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

○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명세서

(단위:처워)

		수 입				다음연도			
계	전년도 이월액	공제료 수 입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	고 유 목 적 사업비	인 력 운영비 (인건비)	기 본 경 비 (운영비)	이월액
17,993,840	12,450,591	4,744,274	626,012	172,963	7,963,194	6,891,959	740,977	330,258	10,030,646

- ※ 고유목적사업비: 공제급여지급, 예방홍보사업, 학교폭력피해지원
- ※ 기타수입: 수익사업(학교소방시설관리사업) 운영수익금+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구상금
- 수입결산은 17,993,840천원으로
 - 공제료수입 4.744.274천원과
 - 이자수입 626,012천원, 수익사업 전입금 120,000천원
 -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52.963천원
 - 전년도 공제사업(학교폭력피해지원 이월금 포함) 12,450,591천원임
 - 지출결산은 7,963,194원으로
 - 공제급여지급 6,624,444천원과
 - 예방홍보사업 98.872천원
 - 학교폭력피해지원 91,678천원
 - 인건비 740,977천원
 - 업무추진비 32,879천원
 - 일반운영비 374,344천원
 - 다음연도 이월액은
 -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(이월금) **10,030,646천원**임

3. 참고사항

가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	예치 및 예탁액										
	예치(탁)처	2011년도말 현재액	2012년도말 현재액	2013년도말 현재액@	2014년도말 현재액⑤	증 감 (b-a)	비고					
합계		14,638	15,104	12,450	10,030	-2,420						
	농협은행	14,638	9,904	9,687	7,767	-1,920						
	우리은행	0	3,500	2,200	1,700	-500						
	하나은행	0	1,700	0	0	0						
	임차보증금	0	0	563	563	0						

나.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

(단위:백만원)

			3	도 성	ļ <u>o</u>	4					집	행	액		
연도별	계 (a)	출 연 금	보 조 금	공 제 료 수 입	구상금 회수 (이자 포함)	예수금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 ⑤	공제 급여	학교폭 력 지원비	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	차입금 원리금 상환	기타 지출	잔액 @-b
~2006년 까지	44,468	9,307		23,014			12,147		29,378	25,495		3,883			15,090
2007	2,990	42		2,220			728		3,765	3,180		585			-775
2008	2,988	30		2,191			647	120	3,149	2,511		638			-161
2009	3,947	30		3,201			596	120	3,496	2,809		687			451
2010	4,402	30		3,652			600	120	3,905	3,132		773			497
2011	4,245	30		3,518			577	120	4,709	3,795		914			-464
2012	6,145	30	1,668	3,710			617	120	5,679	4,441	71	1,167			466
2013	4,858	60		3,895			731	172	7,512	6,104	70	1,338			-2,654
2014	5,543	0		4,744	53		626	120	7,963	6,624	92	1247			-2,420
계	79,586	9,559	1,668	50,145	53		17,269	892	69,556	58,091	233	11,232			10,030

※ 공제급여: 사고보상비, 학교폭력지원비: 학교폭력피해지원, 인력운영비 및 기본운영비: 운영비 등